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20
----------	------

2024년 2월 27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월 26일, 이종태 의원
2.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3. 상정일자 :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종태 의원)

1. 제안이유

- 해당 조례는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재난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는데 반해 학부모회 조례는 반드시 재난 등의 상황에서만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호 모순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실시한 전자적 방식의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에 익숙해진 학부모와 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학부모의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 또한 최근 소규모학교 증가 추세 및 단위학교 학부모 대표구성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학년별·학급별 학부모 대표를 대의원회 포함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개정하고 단위학교 학부모회 대의원회 운영의 효과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총회 운영방법의 융통성 부여 및 전체 학부모 참여 보장(안 제 13조 제5항, 제6항)
- 나. 대의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학교자율성 제고 (안 제14조제1항)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26일 이종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520호로 발의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부모 총회의 참여 방식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학부모들의 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의원회 구성원 조직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대의원회 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¹⁾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²⁾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에 학부모 위원이 포함되면서 법제화 되었습니다.
-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학부모 참여와는 별도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학부모회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되었던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³⁾.
- 이에 현재 서울시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99.8%)에 학부모회가 조직되어 있으며([표-1] 참조), 이 중 90% 이상의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별개로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하는 등 학부모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1]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현황

학교급	학교수	학부모회 운영 학교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과 별개로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한 학교수 (%)
초등학교	604	302(99.6%)	577(95.8%)

- 1)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 ② 생략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① 생략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 3. 생략
 - ③ ~ ④ 생략
- 3) 제2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2015.9.1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가결.

중학교	390	390(100.0%)	370(94.9%)
고등학교	321	321(100.0%)	284(88.5%)
전체	1,315	1,313(99.8%)	1,231(93.8%)

○ 한편 학부모회와 관련이 있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운영위원회 조례’)」에는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을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하게 하는 등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회의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⁴⁾.

○ 이와 같이 현재 ‘운영위원회 조례’와 ‘학부모 조례’는 서로 연계되는 조항이 있는바,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과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회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에 대한 검토

1) 총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안 제13조제5항은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

4)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에 의한 투표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으며,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 선출이 어려울 때에는 선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우’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로 규정하고, 안 제13조제6항은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의 경우 서면, 우편, 전자투표 등으로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부모회는 동 조례에 따라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전체 학부모들로 구성된 기구이며,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⁵⁾.

- 그러나 학부모 조례 제12조제5항에서 “출석”의 의미가 실제 참석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 등도 출석으로 보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동 조례 제13조제5항⁶⁾에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해석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런 점에서 안 제13조제5항에서 총회 개최 방식을 “대면(對面)에 의한 총회”로 구체화한 것은 학부모 총회의 기본 방식이 “대면(對面)”이고, “대면(對面)에 의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등의 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는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안 제13조제5항은 총회 개최 방식의 예외적 사유 중 ‘불가피한 사유’를 ‘사유’로 완화하고 있고 안 제6항에서는 대면에 의한 총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의 경우 서신·우편·전자적 방법 등

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총회) ① ~ ④ 생략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생략

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총회 의결사항 등) ① ~ ④ 생략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을 통해서도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동 조례 제4조제1항⁷⁾에서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경우, 이미 학부모 조례 제13조제5항의 예외적 사유 없이도 서신 등의 방법 등을 통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운영위원회 조례와 학부모회 조례간의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 이에 안 제13조제5항 및 안 제6항이 학부모 총회 개최의 예외적 사유를 완화하고 다수의 학부모들이 서신·우편·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총회 의결사항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두 조례상의 모순을 해결하면서 학부모의 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코로나 19 이후 화상회의가 활성화되면서 학부모들도 화상회의로 대면 참여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동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행정편의로 대면 참여가 아닌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활용하여 의사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 경우 학부모의 직접 참여 활동이 저해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후속 지침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대의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학부모회 조직 중 하나인 대의원회 구성을 ‘임원, 학년

7)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에 의한 투표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으며,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별 학부모회 대표,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 에서 ‘임원’ 으로 변경하고, 해당 학교에 학년별, 학급별, 기능별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그 대표가 대의원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 조례 제11조⁸⁾를 살펴보면, 학교내 학부모회 조직은 기본적으로 총회를 두되, “필요할 경우” 해당 학교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현재 학부모회 조직 구성은 학교의 재량 사항입니다.
- 이에 일부 학교의 경우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학급별·기능별 학부모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안 제14조에서 대의원회 구성에 학부모회 임원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그 외 학년별·학급별·기능별 학부모 대표는 학교에 관련 학부모회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 대의원회 구성원으로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은 조항 간 통일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표-1] 학부모회 조직 구성 예시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안은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기회

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를 보장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학교자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917, 2024. 2. 16.).

IV.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사유로 인하여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총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제5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
에 따라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의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에 따
라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구성한 경우 그 대
표를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총회 의결사항 등) ① ~ ④ (생 략)</p> <p>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13조(총회 의결사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사 유로 인하여 대면(對面)에 의한 방 법으로 총회----- ----- -.</p> <p>⑥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 부모는 제5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총회 의결에 참여 할 수 있다.</p>
<p>제14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임 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 우 대의원의 수는 해당 학교 학부 모회 규정으로 정한다.</p> <p>② ~ ⑦ (생 략)</p>	<p>제14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임 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에 따라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 별 학부모회를 구성한 경우 그 대 표를 포함한다.</p> <p>② ~ ⑦ (현행과 같음)</p>